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32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1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32호)

1.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3.
3. 회부연월일 : 2024. 6. 14.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21호)

1.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5.
3. 회부연월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안)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내국세 총액 대비 비율(이하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4%, 24.24%로 각각 1%p,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호).

현행	김영진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 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 분의 45 및 다른 법률 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 원으로 사용되는 세목 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 에 해당 하는 금액 2. ~ 4. (생략) ② (생략)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 1. ----- ----- ----- ----- ----- ----- ----- <u>1만분의 2,024</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 ----- ----- ----- ----- ----- ----- <u>1만분의 2,424</u> 에-----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란 현행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2)에 따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 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이 중 특히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의 기본 유형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재원(내국세 총액 × 지방교부세율(19.24%) × 97%)의 충분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음.³⁾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6건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소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보통교부세 등 재원 확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내국세 총액 대비		
		현행	개정안	증감
00077	박완주	19.24%	25.00%	5.76%p
00224	김영진		20.24%	1.00%p
01108	이해식		- 2021년: 21.03%	- 2021년: 1.79%p
			- 2022년: 22.14%	- 2022년: 2.90%p
02653	서삼석		- 2021년: 21.54%	- 2021년: 2.30%p
			- 2022년: 23.84%	- 2022년: 4.60%p
			- 2023년: 26.14%	- 2023년: 6.90%p
03043	이원택		- 2021년: 21.24%	- 2021년: 2.00%p
			- 2022년: 23.24%	- 2022년: 4.00%p
			- 2023년: 25.24%	- 2023년: 6.00%p
15281	김태호	- 2023년: 21.62%	- 2023년: 2.38%p	
		- 2024년: 24.00%	- 2024년: 4.76%p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통교부세 재원의 충분성은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매년 실제 재정부족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총합 대비 재원이 충분한지 여부가 될 것임.

3) “내국세 총액 × 지방교부세율(19.24%) × 3%”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또한 지방교부세율의 영향을 받지만, 주로 논의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전개됨.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실제 재정부족액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되나⁴⁾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의 총합이 재원을 초과하면 “재원 / 교부액 총합”을 의미하는 조정률을 곱하여 교부함. 예를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A·B·C 3개이며 2024년 산정된 각각의 교부액이 5,000억원씩 총 1조 5,000억원인데 2024년 보통교부세 재원이 총 1조 2,000억원에 불과하면, 조정률로 80%(재원 1조 2,000억원 / 교부액 총합 1조 5,000억원)를 곱하여 A·B·C에 4,000억원씩만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매년 조정률이 100%에 미달하면 실제 재정부족액 대비 재원이 부족한 것이고 100%를 초과하면 재원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최근 10년간의 조정률을 살펴보면 전반기 5년간(2015~2019년)은 모두 80% 후반을 초과하며 90%대인 경우도 2회 있었던 반면 후반기 5년간(2020~2024년)은 1개년도를 제외하면 모두 80% 초반 이하이고 70%대인 경우도 2회 있어,

실제 지방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19.24%)을 인상할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2015~2024년) 보통교부세 조정률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정률	86.6%	89.7%	94.0%	91.5%	86.4%	83.6%	73.2%	86.0%	81.6%	75.0%

주) 조정률(재원 / 교부액 총합) 중 “재원”은 각 연도 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재작성

4)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다만, 지방교부세율(19.24%)의 인상 여부 및 적절한 인상 규모는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최근 국가재정 또한 재정지출(총지출)을 자체 재정수입(총수입)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매년 국채 등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재정 여건과 지방재정 여건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 여건은 총수입/총지출 비율을, 지방재정 여건은 전국재정자주도(지자체 자주재원/지출예산)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국가재정 여건이 지방재정 여건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가·지방 재정여건 비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수입/ 총지출 비율 (A)	101.8%	101.2%	103.4%	104.3%	101.4%	94.0%	86.5%	91.1%	97.9%	93.2%
전국 재정 자주도 (B)	68.7%	69.0%	69.1%	69.3%	68.4%	69.4%	66.4%	69.6%	69.7%	66.3%
격차 (B-A)	-33.1%p	-32.2%p	-34.3%p	-35.0%p	-33.0%p	-24.6%p	-20.1%p	-21.5%p	-28.2%p	-26.9%p

주 1) 총수입·총지출: 정부의 총계 기준 재정수입·지출에서 내부거래·보전거래와 9개 기금(외국환
평형기금 및 8개 금융성기금)을 차감한 실질적인 정부 재정수입·지출
2) 전국재정자주도: 지자체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출예산규모
3) 두 지표 모두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둘째, 보통교부세 재원을 확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을 대부분 보전하여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감소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수입 결손 등으로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워며 2023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1%에서 25.3%로 인상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 기관 간의 상반된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 밖에,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1년 단위로 산정·교부되므로 그동안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시행일을 “○○○○년 1월 1일”로 규정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5)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7844호 지방교부세법」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33